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검사주기
1. 취급자·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2)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3)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0배 이상 나.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미만 2)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3)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매 3년 매 2년 매 1년 매 3년 매 2년 매 1년
2. 항공운송사업자 가.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인 경우 다.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매 3년 매 2년 매 1년
3. 감시기설치·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1) 감시기 운영 대수 1대 2)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3)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매 3년 매 2년 매 1년